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9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 사무위임 및 사무관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에 따라 신설함(안 제30조 신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 구역 표기 및 계약기간(안 제30조제1호 및 제2호).

(2) 부지사용료 산정 및 지급방식(안 제30조제3호 및 제4호).

(3) 그 밖에 계약의 변경 및 준수사항 등(안 제3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나. 제30조의 신설로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치를 이동하고,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사무 등을 도시공원 위임사무로 추가하고, 시·자치구 간 도시공원 사무관할을 조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안 별표 5 및 별표 6).

다. 그 밖에 공원시설 이용료 명칭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11. 12.~12. 2.)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계약기간

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일 년 단위(일 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의 공통의 종별란 중 “야영장”을 “야영장(캠핑장)”으로, “야영장 물품대여료”를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30조제1항 관련)”을 “(제31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서울특별시	자 치 구
공 원	도시계획시설(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이전 공원 포함)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자치구 소관 사무를 제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 2020년 6월 28일 이전 자치구 사무공원 또는 녹지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 6. 29.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별표 5 중 기타란을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1조제1항 관련)”을 “(제3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사무명란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무	◦ 같은 법률 제12조의2	

별표 6 사무명란 제2호자목(종전의 제2호아목) 다음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같은 법률 제17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체결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

현 행	개 정 안
	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

현 행	개 정 안
	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일 년 단위(일 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현 행	개 정 안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0조·제31조 (생 략)</td><td>9.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제32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td></tr>
<tr><td>[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 제1항 관련)</td><td>[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 제1항 관련)</td></tr>
<tr><td>
<table>
<tr><th rowspan="2">공원별</th><th rowspan="2">종 별</th><th rowspan="2">사용기준</th><th colspan="2">금 액(원)</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체육경기</th><th>기타행사</th></tr>
<tr><td rowspan="6">공 통</td><td colspan="5">(생 략)</td></tr>
<tr><td rowspan="2"><u>야영장</u></td><td>야영장소 1회당</td><td>10,000~30,000</td><td>◦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td></tr>
<tr><td>전기 1회당</td><td>3,000~5,000</td><td></td></tr>
<tr><td rowspan="2"><u>야영장 물품대여료</u></td><td>야영텐트 1회당</td><td>5,000~20,000</td><td></td></tr>
<tr><td>1인용매트 1회당</td><td>1,000~1,500</td><td></td></tr>
<tr><td colspan="5">(생 략)</td></tr>
<tr><td>남 산 공 원</td><td colspan="5">(생 략)</td></tr>
<tr><td>서울대공원</td><td colspan="5">(생 략)</td></tr>
</table>
</td><td>
<table>
<tr><th rowspan="2">공원별</th><th rowspan="2">종 별</th><th rowspan="2">사용기준</th><th colspan="2">금 액(원)</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체육경기</th><th>기타행사</th></tr>
<tr><td rowspan="6">공 통</td><td colspan="5">(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2"><u>야영장 (캠핑장)</u></td><td>야영장소 1회당</td><td>10,000~30,000</td><td>◦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td></tr>
<tr><td>전기 1회당</td><td>3,000~5,000</td><td></td></tr>
<tr><td rowspan="2"><u>야영장 (캠핑장) 물품대여료</u></td><td>야영텐트 1회당</td><td>5,000~20,000</td><td></td></tr>
<tr><td>1인용매트 1회당</td><td>1,000~1,500</td><td></td></tr>
<tr><td colspan="5">(현행과 같음)</td></tr>
<tr><td>남 산 공 원</td><td colspan="5">(현행과 같음)</td></tr>
<tr><td>서울대공원</td><td colspan="5">(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 (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 신 설 〉	
녹지	○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기타	◦ 도시자연공원구역	

[별표 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 (제31조제1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이전 공원 포함) ◦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자치구 소관 사무를 제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 2020년 6월 28일 이전 자치구 사무공원 또는 녹지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 6. 29.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 삭 제 〉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

[별표 6] 사무위임(제32조제1항 관련)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

현 행			개 정 안		
가. 조성계획 (변경) 입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원장	가. 조성계획 (변경) 입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원장
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같은 법률 제24조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같은 법률 제24조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출입제한 등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출입제한 등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신 설 〉	〈 신 설 〉		**사. 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무**	**◦ 같은 법률 제12조의2**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 신 설 〉	〈 신 설 〉		**차.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같은 법률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임차료

- 도시공원부지 무상사용 : 별도 비용 발생 없음
- 도시공원부지 유상사용
  · 240,414원/㎡(근린공원 임야 평균 공시지가 기준) × 62,392㎡(계약예상면적) × 3%(토지사용료 요율) = 450백만원
  ※ 추후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 및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확한 임차료 산정

○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은 무상사용 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 유상사용 계약의 경우에도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일부분을 중점으로 계약 예정임

4. 작성자

공원녹지정책과 오승재(2133-2038)